



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와 피고(중간확인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중간확인피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중간확인원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간확인의 소]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고소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출판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3. 12. 17. E Agency(이하 'E 에이전시'라 한다)를 통하여 F, Inc.(이하 'F'라 한다)와 'D이 F로부터 G이 집필한 H 4판(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우리말 번역판의 제작 및 출판을 허락받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4. 20. D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한 'I'(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 이하 '이 사건 번역서'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D은 2005. 3. 1. 이 사건 번역서의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위 2004. 4. 20.자 출판권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작자의 표시 : 원고

저작물의 표시 : 이 사건 번역서

저작물의 종류 : 번역 저작물

갑 : 원고

을 : D

제1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저작권의 사용료 등)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대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사용료 4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계약의 유효기간과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② 제1조에 따라 설정된 을의 출판권은 본조에서 정하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 존속한다.

제5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그 후 J 출판사(이하 'J'라 한다)는 2010. 2. 25. F와 'J가 F로부터 G이 집필한 H 5권에 대한 우리말 번역판의 제작 및 출판을 허락받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0. 3.경 H 5권을 우리말로 번역한 'K(이하 '대상 번역서'라고 한다)을 집필하고, 그 무렵 J에 대상 번역서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J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여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는 그 요청에 따라 대상번역서를 집필함에 있어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였는바, 원저작물의 내용에 관한 이 사건 번역서와 대상 번역서의 각 해당 번역 내용의 일부분을 비교하면 별지 비교표와 같다(이 사건 번역서와 대상 번역서의 각 번역 내용 전부를 모두 인정사실로 적시하기 어려우므로, 이 중 일부분의 기재를 발췌하여 적시한다).

2. 본소와 중간확인 의 소의 각 적법 여부

가.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F와 D 사이의 번역출판계약서 제7조에서 '이 사건 번역서에 관한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소 제기 등 법적 절차에 관한 모든 권리는 F만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F와 D이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중간확인 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번역서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중간확인 의 소로써 이 사건 번역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고소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중간확인 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바, 원고의 저작권 자체의 존부가 이 사건 본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한 금지청구권 및 형사고소권'의 존재 여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본소의 판단에 대한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본소의 판단 대상 그 자체이어서 역시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게다가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본소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확인 의 소는 중간확인 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으로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여 이 사건 번역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은 대상 번역서 중 H 5판에 새로 추가된 부분인 디지털 기법에 관한 번역 부분만을 집필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상 번역서 인쇄본 표지에 'C·B 옮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상 번역서에는 이 사건 번역서에서 번역되지 아니한 부분(H 5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번역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번역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11년 하반기에 피고 B만이 원고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대상 번역서 인쇄본 표지의 피고 C 성명 표시만으로는 피고 C가 대상 번역서 중 이 사건 원저작물(H 4판)과 같은 내용을 번역한 부분을 집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번역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번역서에는 번역투 표현이 아닌 국어문법에 맞는 표현, 외래어(한문)가 아닌 우리말식 표현, 구어체 표현, 직역하지 아니하고 의역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등에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번역저작물(이 사건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번역서의 집필과정에서 원고에 의해 부가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 이하 같다)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원저작물이 건축 제도(製圖) 방법에 관하여 대부분 단문으로 설명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이를 번역한 이 사건 번역서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저작물이 위 주장과 같이 각종 건축 도면 내지 그 제도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수록하면서 각 도면에 덧붙여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그 제도 방법을 해설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각종 도면이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장으로 그 제도 방법의 해설을 서술한 부분까지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그 문장의 장단에 불구하고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번역서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 중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제도 방법의 해설 부분'을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 집필하여 각종 도면과 함께 실은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닌 D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번역서 인쇄판 제IV면에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자와 독점 계약으로 D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2004. 4. 20. D과의 출판권 설정계약으로써 D에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하여 7년간 독점적인 복제권 및 배포권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상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이 D에 있다고 할 수 없고(위 출판권 설정계약 제4조, 제7조는 원고가 D에



기간을 정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뿐 저작권 자체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D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D이 E 에이전시를 통하여 F로부터 우리말 번역판의 제작 및 출판을 허락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번역서 인쇄판 제IV면 기재 문구상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우리말 번역판을 작성하여 복제·배포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B는 'D과 F 사이의 번역출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이 E 에이전시 또는 F에게 귀속되었다'고도 주장하나, D과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저작권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중 별지 비교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원저작물의 내용에 관한 이 사건 번역서와 대상 번역서의 각 해당 번역 내용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번역서와 대상 번역서의 각 해당 번역 내용 사이에 인정되는 실질적 유사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여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는 그 요청에 따라 대상번역서를 집필함에 있어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한 점, 대상 번역서에는 이 사건 번역서의 문법상 오류를 그대로 옮긴 부분(예를 들어, 이 사건 번역서의 58면에 기재되어 있는 '깊이 있는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해선 굵기에'라는 표현에서 '위해선 굵기에' 부분은 '위해 선 굵기에'의 띄어쓰기를 잘못된 것임에도 대상 번역서 74면에 동일하게 표현되



어 있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 번역서는 이 사건 번역서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성명표시 여부 및 동일성 유지 여부

또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상 번역서 인쇄본에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번역서의 내용과 형식 일부를 수정·변경하여 대상 번역서에 수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5) 고의 또는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번역서와 대상 번역서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J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번역서를 참고하여 대상 번역서를 집필하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피고 B는 J에 대상 번역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J가 확보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 B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번역서의 이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J에게 그 이용 내지 출판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주의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으로 원고의 이 사건 번역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번역서의 각 번역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번역 내용이 포함된 대상 번



역서를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일부를 수정·변경하여 대상 번역서에 수록한 채 J를 통하여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

1) 원고에게 출판권이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번역본인 이 사건 번역서를 출판할 권원 내지 권리가 없으므로 대상 번역서의 출판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번역서를 출판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항변

피고 B는, 앞서 본 D과 F 사이의 번역출판계약 의하면 계약 종료와 함께 모든 권리는 F에 귀속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번역서를 출판할 권리가 없고, 반면 피고 B는 F로부터 H 5판을 번역할 적법한 권리를 수여받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



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번역서를 출판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번역료 4,000,000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 4,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출판사 사이의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B와 같은 다른 번역자들에게 이 사건 번역서의 이용을 허락할 때에도 같은 금액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다른 번역자들로부터 통상 4,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 B의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침해의 범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이 사건 원저작물의 지명도 등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피고 B가 원고의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위 침해행위의 정도 및 태양, 저작권의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금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3,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0-30

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이창민

 판사 김민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0-30

(목록)

저작물의 표시

서적명: I(H 4판)

지은이: G

출판사: D

초판발행: 2005. 3. 1. 끝.



비교표

서적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H 2판	Slick papers are generally better for <u>inking</u> , while some degree of tooth is necessary for pencil work.	This drawing on the right <u>illustrates</u> a building whose walls <u>encompass</u> the site.	This drawing uses a <u>hierarchy of line weights</u> to convey depth.
2판의 번역 (참고)	<u>잉킹</u> 에는 매끈한 표면의 종이가 좋으며 연필로 그리기에는 종이의 표면이 어느 정도 거칠은 것이 필요하다.	오른쪽의 도면은 건물의 벽이 대지를 <u>둘러싸는</u> 건물을 설명한다.	이 도면은 평면제도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깊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u>선 굵기의 위계</u> 를 사용하고 있다.
H 4판	Fine-tooth papers are generally better for <u>inking</u> , whereas medium-tooth papers are more suitable for pencil work.	This drawing <u>illustrates</u> a building whose exterior walls <u>encompass</u> the site.	This drawing uses a <u>hierarchy of line weights</u> to convey a sense of spatial depth.
이 사건 번역서	(12면) 미세한 입자가 있는 트레이싱지는 <u>잉크로 제도하기</u> 좋고, 중간 입자의 트레이싱지는 연필로 작업하기에 적합하다.	(54면) 이 도면은 건물 외벽이 대지를 <u>가로지르는</u> 건물을 보여준다.	(58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해선 <u>굵기에 위계</u> 를 준 도면이다.
H 5판	Fine-tooth papers are generally better for <u>inking</u> , whereas medium-tooth papers are more suitable for pencil work.	This drawing illustrates a building whose exterior walls <u>encompass</u> the site.	This drawing uses a <u>hierarchy of line weights</u> to convey a sense of spatial depth.
대상 번역서	(22면) 미세한 입자가 있는 트레이싱지는 <u>잉크로 제도하기</u> 좋고, 중간 입자의 트레이싱지는 연필로 제도하기에 적합하다.	(70면) 이 도면은 건물 외벽이 대지를 <u>가로지르는</u> 건물을 보여준다.	(74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해선 <u>굵기에 위계</u> 를 준 도면이다.
비고	동일 내지 유사	동일	동일(띄어쓰기 오류까지)



서적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H 2판	This drawing is a sectional view of a building using a <u>single-line weight</u> . It is difficult to discern what is <u>cut</u> and what is seen is elevation.	The distance from the station point to the object influences the <u>rate of foreshortening</u> in the final perspective	The left can be visualized. The <u>change in scale</u> between the left-hand shelving and the <u>patio doors</u> beyond, and a similar change between the foreground table and the <u>window seat</u> beyond, <u>serve to emphasize the depth of the perspective</u> .
2판의 번역 (참고)	이 도면은 <u>단일선 굵기</u> 로 그린 건물 단면도이다. 절단된 것과 입면 상에서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정점(SP)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투시도에서 원근법에 의한 <u>축소</u>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왼쪽 선반과 그 너머 <u>patio 문</u> 사이의 <u>척도의 변화</u> . 그리고 전면 탁자와 그 너머의 <u>window seat</u> 사이의 비슷한 변화가 <u>투시도의 깊이</u> 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H 4판	This is a building section drawn with a <u>single line weight</u> . It is difficult to discern what is <u>cut</u> and what is seen in elevation beyond the plane of the cut.	The distance of the station point(SP) to an object influences the <u>rate of foreshortening</u> of the object's surfaces that occurs in the perspective drawing.	The <u>change in scale</u> between the righthand shelving and <u>patio doors</u> beyond, and a similar change the <u>foreground table</u> and the <u>window seat</u> beyond, serve to emphasize the depth of the perspective.
이 사건 번역서	(58면) 선굵기 하나로 그린 건물 단면도이다. 절린 부분과 절단면 뒤쪽부분에 보이는 입면을 구분하기 어렵다.	(96면) 정점(SP)과 물체 사이의 거리는 투시도에서 나타나는 물체표면이 원근법에 따라 줄어드는 비율을 결정짓는다.	(105면) 오른쪽에 있는 선반과 정원으로 나가는 문과, 앞쪽의 탁자와 뒤쪽으로 보이는 창문 옆의 의자크기를 조정하여 투시도의 깊이감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H 5판	This is a building section drawn with a <u>single line weight</u> . It is difficult to discern what is <u>cut</u> and what is seen in elevation beyond the plane of the cut.	The distance of the station point(SP) to an object influences the <u>rate of foreshortening</u> of the object's surfaces that occurs in the perspective drawing.	The <u>change in scale</u> between the righthand shelving and <u>patio doors</u> beyond, and a similar change the <u>foreground table</u> and the <u>window seat</u> beyond, serve to emphasize the depth of the perspective.
대상 번역서	(74면) 선 굵기 하나로 그린 건물의 단면도이다. 절린 부분과 절단면 뒤쪽부분에 보이는 입면을 구분하기 어렵다.	(118면) 정점(SP)과 물체 간의 거리는 투시도 상에서 발생하는 물체의 <u>축소</u> 율에 영향을 준다.	(129면) 오른쪽에 있는 선반과 정원으로 나가는 문, 앞쪽의 탁자와 뒤쪽으로 보이는 창문 옆의 의자 크기를 조정하여 투시도의 깊이감을 강조했다.
비고	동일 내지 유사	유사(일부 수정·변경)	동일 내지 유사



서적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원문 및 번역 내용
H 2판	This is a normal eye-level view—the one to which we are most accustomed. Here, a courtyard house is seen in an aerial view from above.	when a plan drawing has several floor levels within its field, varying the intensity of the tonal values can help convey the relative depth of the floor planes below the plan cut.	You can then use 45° triangle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and the shadows cast by vertical elements in perspective. The shadow falls along this slice line and terminates at the hypotenuse of the 45° triangle.
2판의 번역 (참고)	이것은 보통 눈 높이 시각이다. -우리가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 안뜰이 있는 주택을 위로부터 공중시각(aerial view)에서 본다.	평면도가 그 바탕내에서 몇 개의 바닥레벨을 갖고 있는 경우, 농담의 명도의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절단된 평면 아래의 바닥면들의 상대적 깊이를 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하여 45° 삼각형은 실제 광선과 투시도에서 수직요소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자는 이 절단선에 떨어지고 45° 삼각형의 사변에서 끝난다.
H 4판	This is a normal eye-level view—the one to which we are most accustomed. Here, a courtyard house is seen in an aerial view from above.	when a plan drawing has several floor levels within its field, varying the intensity of the tonal values can help convey the relative depth of the floor planes below the plan cut.	You can then use 45° triangle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and the shadows cast by vertical elements in perspective. The shadow falls along this slice line and terminates at the hypotenuse of the 45° triangle.
이 사건 번역서	(113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일반적인 눈높이 시점(eye-level view)이다. 뜰이 있는 집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aerial view)이다.	(137면) 한 장의 평면도가 여러 층을 포함할 때, 명암의 강도를 달리하면, 절단면 아래에 있는 바닥평면도의 상대적 깊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155면) 다음으로 45도 삼각형을 이용하여 광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시도 위에 수직요소들의 그림자를 그린다. 이 자른 선을 따라 그림자가 떨어지고, 45도 삼각형의 빗면에서 그림자가 끝난다.
H 5판	This is a normal eye-level view—the one to which we are most accustomed. Here, a courtyard house is seen in an aerial view from above.	when a plan drawing has several floor levels within its field, varying the intensity of the tonal values can help convey the relative depth of the floor planes below the plan cut.	You can then use 45° triangle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and the shadows cast by vertical elements in perspective. The shadow falls along this slice line and terminates at the hypotenuse of the 45° triangle.
대상 번역서	(137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일반적인 눈높이 시점(eye level view)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aerial view)이다.	(165면) 한 장의 평면도가 여러 층을 포함할 때, 명암의 강도를 달리하면, 절단면 아래에 있는 바닥 평면도의 상대적 깊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185면) 다음으로 45도 삼각형을 이용하여 광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시도 위에 수직요소들의 그림자를 그린다. 자른 선을 따라 그림자가 떨어지고 45도 삼각형의 빗면에서 그림자가 끝난다.
비고	동일 내지 유사	동일 내지 유사	동일 내지 유사